

제요금 등 관리규정

제정	1983.07.01.	개정	2008.07.16.
개정	2010.05.10.	개정	2013.09.02.
개정	2015.09.01.	개정	2017.04.01.
개정	2018.01.01.	개정	2020.01.01.
개정	2022.01.01.	개정	2022.05.23.
개정	2023.01.01.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일괄정비안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의료수가 및 제사용 요금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의료수가 및 사용대금”(이하“제 요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의료원에서 징수하는 진료행위 및 부대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수가를 말한다. <개정 2013. 9. 2.>

제3조(제요금의 결정) ① 제2조에 규정된 제요금은 당해 연도의 원가계산과 물가지수 변동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등을 감안하여 그 연도의 제 요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의료급여환자의 진료수가는 법률에서 정한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9. 2.>

② 일반환자(“입원실료” 제외)는 요양급여수가의 140%를 적용하여 받는다.<개정 1995. 7. 15., 2013. 9. 2., 2015. 9. 1., 2017. 4. 1.>

③ 입원실료(“기준병실료”제외) 장례식장사용료, 구급차사용료, 제증명수수료 등의 실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9. 2.>

제4조(입원약정서) 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 및 보호자가 연서한 입원약정서를 작성하게 한다. <개정 2010. 5. 10., 2018. 1. 1.>

제5조(제요금의 징수) ① 제요금의 징수는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하고 매월 5, 10, 15, 20, 25, 30일 기준으로 중도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 7. 15.>

② 퇴원, 사망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 입·퇴원일의 입원실료는 입·퇴원시간에 불구하고 1일로 계산하며 전과 또는 입원실 등급 변경일의 입원실료는 전입된 입원실의 요금을 징수한다.

제6조(연대보증인의 책임) 삭제 <2018. 1.1.>

제7조(취약계층 등 제요금의 감면) <전부 개정 2020. 1. 1. 일부개정 2022. 5. 23. 2023.1. 1.>

① 의료취약계층 등 지역특성에 따른 소외계층의 진료비 지원 및 장례식장 사용료(안치료, 빈소료, 접객실료)을 위하여 (별표 1)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요금을 감면할 때에는 각 호의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별지 1호의 추천.의뢰서(제1항 제3호 내지 제14호의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또는 의료급여보험증, 건강보험(차상위)보험증 사본. 단,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대상자)
3. 주민등록등본(가족사항 파악자료 필요 시)
4. 소득증명원(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소득증명원 등. 제1항 제11호 내지 제14호의 대상자)

③ 취약계층 진료지원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외래 :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동일 상병으로 계속해서 진료가 이뤄져야 할 경우 해당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
2. 입원 : 연간 3회 이내
3.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의 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단, 의사의 진료처방에 의하지 않고 대상자 본인 요청에 의한 항목(상급병실료, 영양제, 간병료, 비보험 MRI, 건강검진, 보호자 식대 등)과 제증명료는 지원되지 않음
4. 제1항 제15호의 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금 총액의 20%를 지원
5. 제1항 제16호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총액 및 장례식장 사용료의 50%를 지원
6. 제1항 제17호의 대상자의 진료비 지원은 협약체결기관의 협약서를 따른다.

④ 제1항의 지원자 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진료비 등 감면요청서의 서식에 의거 제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1.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 환자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경우

2. 직원안전 사고가 발생한 때에 직원안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경우

3. 진료사고 배상규정에 의거 진료비 등 감면 심의.의결을 받은 경우

4. 주치의의 진료비 감면 요청이 보상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

제8조(본원 직원의 공상치료) 삭제 <개정 2015. 9. 1.>

제9조(진료촉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보험회사 기타 일반 기업체의 장이 소속 직원의 치료비를 후납 할 것을 내용으로 촉탁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진료 종료 후에 해당기관장에게 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제증명 수수료 면제) 공공기관에서 직접고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보험, 공단 등에서 병원에서 치료한 실적이 있는 환자의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제 증명 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7.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7.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9.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5.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일괄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취약계층 지원대상 기준

대상자	지원 규모	대상내역
1. 기초생활 수급자	본인 부담금 전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3.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관할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사람
4.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로서 관할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사람
5.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로서 관할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사람
6.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관할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뢰한 사람
7.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사람
8.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사람
9.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사람
10.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사람
11.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사람
12. 갱생보호 대상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로서 관할 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13. 기타 취약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위기청소년 등 지역소외계층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의뢰한 사람
14. 원내 등록환자		생계문제로 계속(연속) 진료에 곤란을 겪는 환자로서 담당 주치의의 의뢰를 받아(소견서 첨부)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등록을 거쳐 의료원장의 승인을 득한 사람
15. 외국인 근로자	본인 부담금 총액의 20%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16. 용역직원, 사회복지요원		본인부담금총액 및 장례식장 사용료의 50%
17. 협약체결 기관		의료원과 협약 체결된 유관기관